

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-141호

2026년 9월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(종합)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등록하고, 같은 법 제24조의2의제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: 2026. 9. 21. ~ 2026. 10. 20.(30일간)

2. 공고대상: 붙임 참고

3.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: 2026. 9. 21.

4. 공고내용

가. 자동차정기(종합)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운행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
다.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81조제22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(031-940-543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1일

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